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5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부승찬·윤후덕·한정애

안규백 · 임오경 · 이개호

강선우 · 강대식 · 이재관

박민규 • 차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			
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	4		
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			
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			
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u>		
	을 기피하여 「병역법」 제88		
	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		
	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